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1. 제안이유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 선정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1)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면적	종사자수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시흥점)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시흥점)	368m ²	12명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독산점)	두산로 70, A동 L층 101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144.47m ²	3명
서울형 키즈카페 (아이세상놀이터점)	두산로 70, A동 1층 103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180.94m ²	3명
새길과학놀이터	시흥대로12길 82, 4층(시흥동)	278.69m ²	3명

2) 위탁현황

가) 위 탁 체 : 사단법인 에듀케어(대표 : 이창수)

나) 위탁기간 : 2022. 9. 1.~2025. 8. 31.

다) 운영인력 : 총 21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상근직원 17명)

※ 기타 파견인력(16명) : 대체교사(15명), 대체조리원(1명)

라) 운영예산 : 1,377백만원(2025년 보조금 기준)

나. 주요위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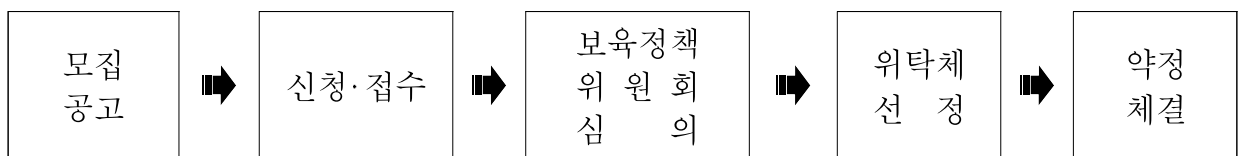
- 1) 위탁기간 : 3년(2025. 9. 1.~2028. 8. 31.)
- 2) 위탁업무 :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가)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다)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체험활동 지원
 - 라)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마) 양육서비스 지원 및 양육정보 안내
 - 바) 보육 및 양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 사)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소요예산 : 1,377백만원(시 198백만원, 구 1,179백만원)

다. 위탁체 선정방법 및 절차

- 1) 선정방법 : 공개모집(금천구보육정책위원회 상정,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의)

※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 최다 득점 기관선정

- 2) 선정절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20조 및 동법 제22조의7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동법 제9조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3. 대표자의 경력사항
 -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이외에 실내놀이터, 장난감 대여실 등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7(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 위탁 기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르며, 위탁 취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

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7.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
8. 예산지원 내용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